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12月 21日(木) 15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
2.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
3.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
5.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6.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7.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8. 休會事件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1995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長金鍾永提出) — 2 面
3.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4 面
4.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同意案(平昌郡守提出) _____ 4 面

5.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平昌郡守提出) ————— 4 面

6.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平昌郡守提出) ————— 7 面

7.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8 面

8.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平昌郡守提出) — 8 面

9. 休會의件(議長提議) ————— 13 面

<p>(15時00分 開議)</p> <p>○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p> <p>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 감사결과,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논의로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p> <p>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15時01分)</p> <p>○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p> <p>(보고사항은 끝에실음)</p> <p>○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p>
<p>1. 報告事項</p>	<p>2.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p> <p>(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金鍾永提出)</p> <p>(15時05分)</p> <p>○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 합니다.</p> <p>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金鍾永 議員 : 김중영 의원입니다.

1995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제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인 평창군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원 4명이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풀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사항을 포함한 17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처리 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부 사업시행에 있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등 절차상의 문제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외에 36건이며, 건의사항은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농경지, 임도시설등 분야별로 상이하어, 관계법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촉구하는것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김중영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4.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5.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이상3件 平昌郡守提出)

(15時09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으로서 조례 제4조의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사업시행 부서가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군지역에서는 400m²에서 700 m²로 확대 조정 하였으며 넷째, 공유 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고자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다섯째, 관사 운영비 중에서 예산에서 부담할수 있는 범위를 기존 1급관사에 한하여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관리비까지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2급관사까지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1일 평창군의회로 부터 의결하여 주신 199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되어서 집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

정법 제77조 제1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의 의결을 받기로 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1995년 11월 29일자로 평창군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95년도 예산에서 국비 1억8,711만원, 도비9,355만 5천원의 국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군비 9,355만원을 부담해서 총 3억7,422만원을 투자하여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 공유지내에 1,000m²에 건축물 600m²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취득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19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준하여 입안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골자는 취득, 처분재산이 총3건에 20,272㎡로서 취득재산의 토지는 평창읍쓰래기매립장 부지 1개소 12필지에 15,907㎡, 건물 신규취득 2건은 종합민원실 신축 1,650㎡와 평창읍 여만리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2,715㎡ 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보충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平昌郡守 提出)

(15時16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 입니다.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관광휴양시설 배후도시인 봉평 면은지역의 개발에 따른 물 수요대체 및 휴양시설인 휘닉스파크 단지내의 용수공급을 위한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봉평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고 기채규모는 10억원입니다. 기채선은 재정투융자금 입니다.

재정투융자금은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기채종류는 증서차입이 되겠고, 증서차입은 평창군수와 환경처와 문서로서 교환하는것이 되겠고 발행시기는 금년 12월이 되겠으며 이율은 6.1%가 되겠습니다

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상환재원은 균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7.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8.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상2件 平昌郡守提出)

(15時2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1995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하여 12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995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5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안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718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79억9,300만

원, 특별회계가 38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특위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입 및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에서 군정수행 유공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 군정수행 유공민간단체 보조금 5,000만원, 군정홍보비 560만원, 주민제도용신문 구독료 1,440만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2,000만원, 지방행정 역점시책추진 여비보상금 1,500만원,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공원화사업 인부임 1,009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 하수도 신설 및 긴급보수비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경운기 후방등 설치 사업비 2,500만원, 벗짚암모니아처리 가스

지원사업비 3,847만5천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650만원, 군도보수정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5,000만원등 총 4억5,507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중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4억4,363만3천원 읍면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 사회개발비중 응급환자 수송여비 144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과 세출중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각각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

計追加更正豫算案

·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이수현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발언 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용욱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平昌郡守 金容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어 오늘까지 제3차 본회의를 마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평창군국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변경동의안 등의 주요 의안들을

처리해 주셨으며 특히 95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과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승인해 주신 의원
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중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
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
분한 업무숙지와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
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의결 승인해 주신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
들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여 희망찬 96년
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 삼겠으며 96당
초예산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
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성예산은
한푼의 돈이라도 더 투자하기 위해 초
고속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한꺼번에 분출되는 주민의 희망사항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자금배

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절약 운
동을 시책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이 국
회에서 통과되므로 인해 지역발전이 가
속화 될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이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해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여러분, 군 산하 공무원 모두는 지
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대적 사명감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현실적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가
일층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가 되도
록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들어켜보면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95년
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와중
에서도 민선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화
시대의 막을 열었고 우리 모두는 살기 좋
은 미래의 평창군을 건설하기 위해 대
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한해 또한 주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군정의 구석구석을 찾아
어루만져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1년동안 수고가 많

으셨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몸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
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용욱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9. 休會의件 (議長提議)

(15時3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8항 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년말 위분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時34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商 滿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財 務 課 長	權 赫 昇

地籍課長	南大鉉
社會課長	金榮柱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産業課長	金時漢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山林課長	李基椿
建設課長	洪基杓
都市課長	權純喆
民防衛課長	金昌吉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技術補給課長	李宇炯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李京植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咸京鎬
地方行政主事補	邊相得
地方行政主事補	李鏡均

【 議 席 】

○ 議席表 (21面に 실음)

【 報 告 事 項 】

○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촌진흥기금운용조례안
-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 변경동의안
-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6건 '95.12.8 - 평창군수제출)
-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2건 '95.12.11 - 평창군수제출)
-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5. 12. 12 -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

(이상2건 '95.12.15 - 평창군수제출)

- . 영.평.정 행정협의회규약안 ('95. 12. 18 - 평창군수제출)
- .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5.12.2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김중영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사항

-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심사결과중액부분발생 ('95. 12. 16 - 평창군에 동의요구 '95. 12. 18 - 평창군수 동의통지)
- .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95.12.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수현제출)

○ 의안처리사항

- .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관철을위한성명서송부 ('95.12.9 - 국회의외26개관련기관,단체)

- .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 .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이상2건 '95. 12. 12 - 평창군이송)

○ 일반문서 접수

- .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5. 12. 18 - 평창군수공포통지)
- . 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한서면질문서 ('95. 12. 14 - 이수현의원제출당일이송)
- . 하용전교가설에대한진정서 ('95. 12. 14 - 용전리 심상호외64인 제출)
- . 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한답변서 ('95. 12. 15 - 평창군수제출)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신설함.

다. 잡종재산 매각시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 : 400㎡ → 700㎡

라.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 :

1급관사 → 1·2급관사로

3. 검토의견

가.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이의 규정을 삭제 하는 것과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던것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변경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로 개정 한것은 세입예산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한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일치 되므로 타당한 조항이라 판단됨.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소관 재산 관리관으로 하여금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토록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한 조항이며,
- 다. 잠종재산매각시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25호의 규정에 의거 400㎡에서 700㎡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 토지가 많이 발생 되리라 생각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보다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라. 기타 체계 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이 국교보조사업으로 신규 책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건물을 신규로 취득코자 함.

가. 재산소재지 :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

나. 수 량 : 건물 1동(건평 180평)

다. 취득 가액 : 374,220천원

라. 취득 시기 : '95하반기

3. 검토의견

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함은 사회보상적 차원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요지에 위치한 균유지를 부지로 책정한 것은
장래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이 적극 대두되는 시점이라 볼때,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자치단
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사항이
라 판단 되며

나. 예산 편성전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서 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적당치 않으며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입니다.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종합민원실신축및 지역농업개발센터신축

< 현 황 >

(단위: m², 천원)

취득재산의표시			취득추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3건	20,272	1,871,235		
토지	평창읍 중부리 508-69외11필지	15,907	249,000	상반기	평창읍쓰레기 매립장부지
건물	평창읍 하리 210-2	1,650	1,100,000	"	종합민원실신 축
	평창읍 여만리 357-6	2,715	522,235	후반기	지역농업개발 센터신축

3. 검토의견

- 평창읍쓰레기매립장 부지의 협소로 인근 토지를 매입 확장하려는 것으로 부지 취득에 따른 민원 발생요지를 사전 해소하는 조치로 생각되며, 건물 신규 취득2건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는은 대민 서비스 행정을 추진키 위한 것으로 의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관광휴양시설 배후 도시인 봉평, 면은지역의 개발에 따른 "물" 수요대처를 위한 봉평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환경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중서차입채로써 기채의 규모는 10억원이며, 년리 6%의 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으로 하고, '95년 12월중에 차입할 계획 임.

3. 검토의견

가. 관광휴양시설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의 증가하는 "물"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열악한 자주재원을 감안한 자원 보전대책으로 건전 재정을 기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이 상부기관의 승인 지연에 문제가 있으나, 예산편성전에 사전 의회의 의결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